

『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2월 23일

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조)
- 전시실 및 회의실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별표)
- 센터 시설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,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제104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-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구미컨벤션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컨벤션센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 및 별표)
- 구미컨벤션센터의 사용허가 제한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-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
○ 검토 결과

- 구미컨벤션센터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, 법적 근거나 타당성 및 조례 안 축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- 다만,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있어 시설 사용료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, 집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더불어,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 매김한 부산 BEXCO를 모델삼아 첨단 IT 산업도시에 맞게 전자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대회 및 전시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